

의안번호	2203469
의 퇴 인	박성민의원
회 답 일	2024. 10. 30.
추 계 번호	24D3361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오름산업벨트¹⁾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해오름산업벨트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7,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9,200만원(연평균 1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 (안 제5조)	203	0	0	0	0	203	41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17	17	17	17	17	84	17
해오름산업벨트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안 제8조)	59	60	61	62	63	305	61
합 계	279	77	78	79	80	592	118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발전계획 수립과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 발전계획에는 국가기간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 지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1) 제정안 제2조에 따르면 해오름산업벨트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의 관할 구역을 말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해오름산업벨트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3개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2	안 제7조(해오름 산업벨트 경쟁력 강화위원회)	-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에 관한 발전계획의 확정·변경,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 (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해오름 산업벨트추진기획단)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둠 (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사업시행자)	- 해오름산업벨트에 관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함	의무규정
5	안 제16조(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 교육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인력양성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음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연구기관이 해오름산업벨트로 이전·설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8조(첨단이차전지·원전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 국가 및 관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 내 첨단이차전지 및 원전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9조(의료·교육시설 설치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설립 등 해오름산업벨트의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1항) - 교육부장관은 대안학교 및 영재학교 등 해오름산업벨트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1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발전계획 수립과 확정)	○	-

2	안 제7조(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	-
3	안 제8조(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	○	-
4	안 제9조(사업시행자)	×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종류·내용, 사업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5	안 제16조(산업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특례)	×	교육부장관이 설치할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 공동캠퍼스의 위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18조(첨단이차전지·원전 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	첨단이차전지 및 원전 기업에 대한 보조·융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19조(의료·교육시설 설치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상급종합병원의 설립 위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육부장관의 대안학교·영재학교 등의 설치비용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8	안 제21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 수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설치될 예산 규모를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유사한 계획 수립 평균예산을 준용함
 -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에 수립한다고 가정
-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해오름산업발전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20명이고, 이 중 위촉위원은 14명으로 가정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30만원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해오름산업벨트추진

진기확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사례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시·도별 평균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함

-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실무지원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실무지원단이 통합 운영 중이며, 특별자치시·도별 평균 실무지원단 운영비용을 준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를 적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 및 법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2023년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2억 300만원³⁾)을 준용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 (안 제5조)	203	0	0	0	0	2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0월 경제전망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2.0	2.0	2.0

- 3)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억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6,000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억 5,000만원)

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680만원 등 총 8,4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4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3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 위촉위원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 및 위원회 참석비,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비용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가정

[표 3]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7조)	16.8	16.8	16.8	16.8	16.8	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 설치·운영(안 제8조)

□ 안 제8조에 따라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 유사 사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실무지원단 통합운영비용으로 2024년 예산에 2억 2,600만원⁵⁾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평균 운영비용인 5,650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5) 세부사업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7035-320)의 내역사업인 지원단 운영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2024년 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4]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오름산업벨트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안 제8조)	59	60	61	62	63	30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7,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9,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 수립	203	0	0	0	0	203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운영	17	17	17	17	17	84
해오름산업벨트 추진기획단 설치·운영	59	60	61	62	63	305
합 계	279	77	78	79	80	5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